

강원특별자치도

경고·주의·시정

제 목 공사 하자보수 점검 부적정

기 관 명 ○○소방서

관 계 부 서 ○○○○○

관 련 자 ① ○○소방서 ○○○○○(前 ○○○○○) 소방○ ○○○

② ○○소방서 ○○○○○ 소방○ ○○○

③ ○○소방서 ○○○○○(前 ○○○○○) 소방○(前 소방○) ○○○

내 용

1. 업무 개요

○○소방서(○○○○○○)에서는 2022년 3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담보책임 존속기간이 남은 00건의 시설공사에 대한 공사 하자보수·점검 및 하자보수보증금 관리 등 공사 하자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 관계 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해야 하고,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요구하거나 보수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고, 하자 검사나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의 산정이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하자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공사에 대한 하자보수관리부¹⁾를 갖추어두고 공사명, 계약금액, 계약상대자, 준공연월일, 하자발생내용 및 처리사항, 그 밖의 참고사항을 기록·유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중 제11절 공사목적물의 하자에 따르면, 하자 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최종검사를 해야 하고, 최종검사와 정기검사 기간이 중복될 경우 최종검사로 같음할 수 있으며, 최종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즉시 하자보수완료 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하여야 하고 이 경우 최종검사에서 발견되는 하자 사항은 이 확인서가 발급되기 전까지 계약상대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보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정기검사와 최종검사에 참관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가 참관을 거부할 경우에는 계약담당자는 일방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동의한 것으로 보고,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의무는 최종검사에 따른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로부터 소멸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소방서(○○○○○)에서는 자체 발주한 시설공사에 대하여는 하자

1) 하자보수관리부 : 공사명, 계약금액, 계약상대자, 준공일, 하자발생 내용 및 처리사항, 그 밖의 참고사항 등을 기록한 장부

보수 관리부를 작성하고 담보책임 존속기간 중 계약상대자 참관 하에 연 2회 이상 정기적인 하자점검을 실시하고 하자기간 만료 14일 전에는 최종검사를 실시하여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어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가. 공사 하자관리 점검 소홀

○○소방서(○○○○○○)에서는 감사 대상 기간 중 담보책임 존속기간이 남아있는 00건의 시설공사에 대하여 ○○○○○○○○○○ ○○ ○○○○(○○) 등 00건은 연 2회 정기하자검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 ○○ ○○○○(○○○○) 등 00건은 최종검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계약상대자를 검사에 참관하도록 하지 않는 등 시설물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나. 공사 하자보수관리부 및 점검 결과 기록 유지 소홀

○○소방서(○○○○○○)에서는 감사 대상 기간 중 ○○○○○○○○○○ ○○ ○○○○(○○) 등 00건의 대상에 대하여 하자보수 관리 및 점검을 하면서 공사명, 계약금액, 계약상대자, 준공연월일, 하자발생내용 및 처리사항, 그 밖의 참고사항을 기록·유지하는 하자보수관리부를 작성하여야 함에도 2022년까지는 기록·유지가 잘 되어 있으나, 2023년·2024년에는 하자보수관리부 및 점검 기록 유지 내용을 작성하지 않았다.

또한 ○○소방서(○○○○○○)에서는 2023년·2024년 하자검사 실시 계획 문서를 시행한 후 시설공사 하자 점검을 위한 현장 출장내역이 없고, 하자 점검 내역이나 결과보고 문서를 만들어 놓지 않았으며, 센터에서 점검을 대신해 문서보고한 내역도 없이 공사 하자관리업무를 처리하였다.

다. ○○ ○○○○○○ 준공 검사 소홀

○○소방서(○○○○○○)에서는 감사 대상 기간 중 0000. 0. 00. ○○ ○○ ○○ ○○(00,000천 원)를 발주하여 계약상대자인 ○○○○○(○○○ ○○○ ○○○ 00, 대표 ○○○)와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공사 계약체결 시 ○○ ○○ 3층에 대한 방수공사 면적으로 포함되었던 부분 중 일부분이 공사 준공 시 실제로 공사가 진행되지 않았음에도 공사 설계서와 도면 및 시방서, 기타 계약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되었음을 확인하는 준공검사조서를 처리하였다.

따라서 방수공사를 실시하지 않고 준공처리된 부분은 공사하자관리 대상면적에 포함되지 않아 방수페인트가 벗겨지고 누수가 발생하여 청사 노후화를 방지하고자 0000년 제0회 추가경정예산을 신청하였다.

4. 관련자 의견 및 판단: 의견 없음

5. 관련자 신분상 처분에 대한 판단

소방☆ ☆☆☆은 2023. 1. 4.부터 2025. 1. 5.까지 ○○○○○ ○○○○○에서 청사 유지관리 및 계약담당자로 근무하면서 공사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이 남아 있는 총 00건에 대한 연 2회 정기하자검사 및 최종검사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고, 2023년·2024년에는 공사하자검사 실시 계획 문서를 시행하였지만 실제 하자검사를 하기 위한 출장내역이나 검사를 한 이후 하자점검내역이나 결과보고 문서를 만들어 놓은 자료가 없었으며, 센터에서 점검을 대신해 문서 보고한 내역도 없어 문서 시행에 따른 하자 검사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0000. 0. 00. 〇〇 〇〇 〇〇〇〇(00,000천 원) 발주하여 계약상대자인 〇 〇〇〇〇(〇〇〇 〇〇〇 〇〇〇 00, 대표 〇〇〇)와 공사계약을 체결 시 〇〇 〇 〇 0층에 대한 방수공사 면적으로 포함되었던 부분 중 일부분이 공사 준공 시 실제로 공사가 진행되지 않은 것을 알았을 때 준공정산 처리하여 공사준공면적을 정리하였어야 했지만, 계약변경이나 준공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최초 공사면적 그대로 준공처리(0000. 0. 00.)를 해주어 공사가 되지 않은 부분은 계약 상대방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할 수 없어 동일한 부분을 0000년 제0회 추가경정예산을 신청하여 소중한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소방♡♡♡♡은 2021. 7. 5.부터 2024. 1. 2.까지 〇〇〇〇〇 〇〇〇〇〇으로 근무하면서 공사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이 남아있는 총 00건 중 00건에 대한 연 2회 정기하자검사 및 최종검사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고, 2023년·2024년에는 공사하자검사 실시 계획 문서를 시행하였지만 실제 하자검사를 하기 위한 출장 내역이나 검사를 한 이후 하자점검내역이나 결과보고 문서를 만들어 놓은 자료가 없었으며, 센터에서 점검을 대신해 문서 보고한 내역도 없어 문서 시행에 따른 하자 검사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0000. 0. 00. 〇〇 〇〇 〇〇〇〇(00,000천 원) 발주하여 계약상대자인 〇 〇〇〇〇(〇〇〇 〇〇〇 〇〇〇 00, 대표 〇〇〇)와 공사계약을 체결 시 〇〇 〇 〇 0층에 대한 방수공사 면적으로 포함되었던 부분 중 일부분이 공사 준공 시 실제로 공사가 진행되지 않은 것을 알았을 때 준공정산 처리하여 공사준공면적을 정리하였어야 했지만, 계약변경이나 준공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최초 공사면적 그대로 준공처리(0000. 0. 00.)를 해주어 공사가 되지 않은 부분은 계약 상대방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할 수 없어 동일한 부분을 0000년 제0회 추가경정예산을 신청하여 소중한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위와 같은 각 행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 의무를 위반하였으나 그 비위의 정도가 「같은 법」 제78조 징계사유에는 미치지 못하는 대신 「(소방)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비위의 정도가 주의보다 중하여 과오를 반성하도록 엄중히 훈계할 필요가 있는 “경고” 처분사유에 해당한다.

소방☞ ☁☁☁는 2024. 1. 3.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 ○○○○○장 으로 근무하면서 공사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이 남아있는 총 00건 중 00건에 대한 연 2회 정기하자검사 및 최종검사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고, 2023년·2024년에는 공사하자검사 실시 계획 문서를 시행하였지만 실제 하자검사를 하기 위한 출장내역이나 검사를 한 이후 하자점검내역이나 결과보고 문서를 만들어 놓은 자료가 없었으며, 센터에서 점검을 대신해 문서 보고한 내역도 없어 문서 시행에 따른 하자 검사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위와 같은 행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 의무를 위반하였으나 그 비위의 정도가 「같은 법」 제78조 징계사유에는 미치지 못하는 대신 「(소방)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비위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되어 그 잘못을 반성하게 하고 앞으로는 그러한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는 “주의” 처분사유에 해당한다.

6. 조치할 사항

가. ○○소방서장은

① [경고] 위 관련자 소방◆ ◆◆◆, 소방● ●●●●을 「경고」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니다.

- ② [주의] 위 관련자 소방△ △△△를 「주의」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 ③ [시정] 2023년, 2024년 작성되지 않은 하자보수관리부를 작성하여 보존·관리하시고, ○○ ○○○○○○ 지출결의서에 금회 처분요구서를 같이 첨부하여 주시길 바라며, 아울러 공사하자관리 및 준공정산에 대한 직원교육을 실시한 후 조치결과와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④ [당부사항] 「(소방)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경고를 받은 공무원 등에 대하여는 처분일로부터 1년간 근무성적평정·전보인사·교육훈련·성과상여금 지급·표창·포상대상자 추천·해외연수 대상자 선발 등에 있어 불이익을 줄 수 있고, 1년 이내에 2회의 경고를 받은 자가 마지막 경고를 받은 날로부터 1년 내에 다시 경고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 의결을 요구할 수 있으며, 주의를 받은 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처분일로부터 1년간 포상대상자 추천·해외연수 대상자 선발 등 기타 수혜적 조치를 함에 있어 불이익을 줄 수 있으니 평정 등 업무에 참고하시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들에 대한 교육 및 업무연찬에 매진하시기 바랍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부서경고·통보

제 목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대상자 관리 소홀

기 관 명 ○○소방서

관 계 부 서 ○○○○○

내 용

1. 업무 개요

○○소방서(○○○○○)에서는 관내 다중이용업소에서의 화재 등 재난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등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 업무를 실시하고 있다.

2. 관계 법령 및 판단기준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르면, 다중이용업주와 그 종업원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소방청장이나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실시하는 소방안전교육을 받아야 하고, 다중이용업주는 소방안전교육 대상자인 종업원이 소방안전교육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14조에 따르면, 다중이용업주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소방시설,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관련 시설의 관리 등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제2호에 따르면,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위반한 다중이용업주와 교육대상 종업원은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시교육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르면, 소방청장이나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중이용업주와 그 종업원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에 대한 자율 안전관리 책임의식을 높이고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사이버 소방안전교육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여야 하고, 사이버교육을 위한 시스템 구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규정」 제2조·제3조·제6조·제9조에 따르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소방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고,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할 경우에는 교육일시·장소 등 교육계획을 교육일 30일 전까지 소방서의 홈페이지에 게재하되, 수시교육 및 보수교육 대상자에게는 교육일 10일 전까지 통보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집교육이나 출장교육 또는 사이버교육 등 교육대상자의 여건을 고려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일시 및 장소와 교육 불참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 사항 등을 기재한 교육통지서를 교육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통지서는 교육대상자의 여건을 고려하여 우편발송·전화·모사전송·전자우편 등 적절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같은 규정」 제6조의2·제11조에 따르면, 소방청장은 사이버교육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한국소방안전원과 공동으로 사이버교육 시스템을 구축·운

영할 수 있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교육대상자가 사이버교육 시스템을 활용하여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소방안전교육을 받은 것으로 갈음할 수 있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교육대상자가 교육통보를 받고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소방서(○○○○○)에서는 화재안전조사팀이 다중이용업소를 점검하고 이 법을 위반한 다중이용업주와 교육대상 종업원은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시교육을 받도록 통지하여야 했으며,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이 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하여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소방서(○○○○○)에서는 다중이용업주 등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업무를 수행하면서 화재안전조사와 함께 소방관련시설 위반 대상에 대하여 다중이용업주에게 3개월 이내에 수시교육을 받도록 문자 등으로 교육대상자임을 통보하여야 하나, 팀원 간 소통 부족 및 법령을 숙지하지 못하여 소방관련시설 위반 대상(○○○○○ ○○○○는 방화문 불량 등)의 수시교육대상자에게 우편발송·전화·모사전송·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통보하지 않고 누락하여 업무를 처리하였고, 위법한 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시교육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중이용업소법에서 정하는 수시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

4. 관련자 의견 및 판단: 의견 없음

5. 관련자 신분상 처분에 대한 판단

소방☆ ☆☆☆는 2021. 7. 5.부터 2022. 7. 3.까지, 소방♡ ♡♡♡는 2022. 7. 4.부터 2024. 1. 2.까지, 소방♣ ♣♣♣는 2024. 1. 3.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장으로,

소방◇ ◇◇◇는 2021. 7. 5.부터 2024. 7. 3.까지 ○○○○○장으로,

소방● ●●●은 2019. 10. 1.부터 2022. 7. 10.까지, 소방△ △△△은 2022. 7. 11.부터 2024. 1. 2.까지, 소방◇ ◇◇◇은 2024. 1. 3.부터 2024. 7. 3.까지 실무담당자로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업무를 담당하였고,

소방Ⓜ ⓂⓂⓂ은 2021. 10. 27.부터 2023. 1. 3.까지, 소방Ⓜ ⓂⓂⓂ은 2023. 1. 4.부터 2025. 1. 5.까지 실무담당자로 화재안전조사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소방☆ ☆☆☆은 2023. 7. 10.부터 2024. 7. 3.까지 실무담당자로 다중이용업소의 민원업무(영업주 안전교육 포함) 업무를 담당하였다.

위 행위자들은 감사 대상 기간 중 규정에 따른 소방관련시설 위반 대상자에 대해 규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할 수시교육 통보를 소홀히 하여, 소방안전교육 미이수자 발생을 초래하는 등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위와 같은 행위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 의무를 위반하였으나, 화재안전조사팀은 직무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낮은 소방안전교육 관련 법령에 대한 연찬을 소홀히 하여, 다중이용업소 민원담당자에게 소방관련시설 위반 사실을 적시에 전달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다중담당자가 수시교육 통보 등 후속 업무를 처리하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하였으며, 이는 부서 간 공람하거나 공유하는 체계가 미비하여 발생한 것으로 정보 전달 책임이

명확히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각자가 타 부서의 업무로 인식한 채 방치한 점은, 단순한 개인의 착오나 실수라기보다 부서의 팀 내 유기적 협업체계가 형성되지 못한 구조적인 문제로 판단되고, 본 사안은 ○○소방서 ○○○○○(예방, 건축민원, 위험물·다중·방염, 화재안전조사, 자체점검, 교육·홍보) 내에서 발생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담당자 간의 기본적인 업무 공유나 사안 인식조차 이뤄지지 않은 점, 이로 인해 수시교육 통보 누락이라는 직접적인 행정 공백을 초래했다는 점에서 이는 업무 분장과 정보 공유 시스템 부재에 기인한 부서 차원의 관리 소홀로 판단되어 개인의 문책보다는 「(소방)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징계책임을 물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지만 비위의 정도가 주의보다 중하여 과오를 반성하도록 엄중히 훈계할 필요”가 있는 「부서경고」 처분 사유에 해당한다.

6. 조치할 사항

가. ○○소방서장은

- ① [부서경고] 다중이용업소 소방관련시설 위반 대상자 수시교육 통보 누락 등 소방안전교육 업무를 소홀히 한 ○○○○○를 「부서경고」 처분하니,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들에 대한 교육 및 업무연찬에 매진하시고, 기관·부서 경고 처분을 받은 기관·부서에 대해서는 특별감사 대상 기관·부서로 지정하여 특별감사를 실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소방본부장(○○○○○○)은

- ① [통보] 다중이용업소에 조치명령 발부 시 수시교육에 대한 교육 및 화재안전조사 시 다중담당자에게 관련 조치사항을 공람 또는 별도로 전달하도록 업무 체계를 정비하여 주시고, 교육대상자에 대한 통보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서 지도점검 시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부서경고·주의·시정

제 목 소방용수시설 정기조사 등 관리업무 소홀

기 관 명 ○○소방서

관 계 부 서 ○○○○○, ○○○○○○○○○○

- 관 련 자
- ① ○○소방서 ○○○○○○○○○○(前 ○○소방서○○○○○○○○○) 소방○ ○○○
 - ② ○○소방서 ○○○○○○○○○○(前 ○○소방서○○○○○○○○○) 소방○ ○○○
 - ③ ○○소방서 ○○○○○○○○○○(前 ○○소방서○○○○○○○○○) 소방○ ○○○
 - ④ ○○소방서 ○○○○○○○○(前 ○○○○○○○○○○) 소방○ ○○○
 - ⑤ ○○소방서 ○○○○○○○○○○ 소방○ ○○○
 - ⑥ ○○소방서 ○○○○○○○○○○ 소방○ ○○○
 - ⑦ ○○소방서 ○○○○○○○○○○ 소방○ ○○○
 - ⑧ ○○소방서 ○○○○○○○○○○ 소방○ ○○○

내 용

1. 업무 개요

○○소방서(○○○○○·○○○○○○○○○)는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총 000개소의 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 관계 법령 및 판단 기준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화전·급수탑·저수조(이하 "소방용수시설"이라 한다)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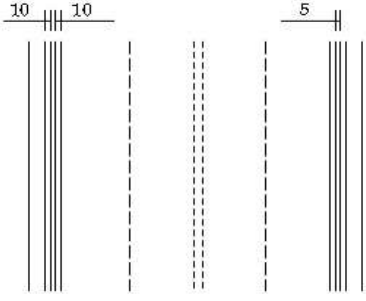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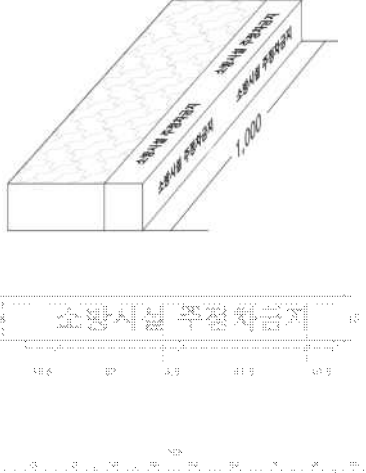
그리고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르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하여 소방용수시설에 대해 월 1회 이상 정기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실시한 결과에 따라 변동사항은 즉시 전 직원에게 알려야 하며, 소방용수시설이 고장 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즉시 담당 부서에 통보하는 등 사후 조치를 하여 화재 현장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현장 소방공무원 복무규칙」 제22조에 따르면, 소방용수시설 조사 시 소방용수의 위치파악 및 소방용수 표지판의 설치여부·구조 및 용량·수압·수심·수량의 감수 여부·지반과 수면과의 거리·토사매물 또는 시설의 고장여부·소방차량의 진입 가부 등에 대해 유의하여 실시하고 소방용수조사부에 조사 내용을 기록유지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주의·규제·지시 등의 내용을 노면에 기호·문자 또는 선으로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고, 소방용수시설 주변에 설치하는 노면표시는 아래 [표2]와 같이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표 2] 소방용수시설 주변 노면표시

일련 번호	종류	만드는 방식 (단위 : 센티미터)	표시하는 뜻	설치기준 및 장소
516의 3	소방시설 주변 정·주차 금지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 제32조제6호 및 영 제10조의3제2항에 따라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또는 소방시설 등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각각 5미터 이내인 곳에서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에 정차 및 주차 금지를 표시하는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안전 표지의 설치를 요청하는 소방 관련 시설로부터 반경 5미터 이내의 도로구간 길가장자리에 설치 •길가장자리구역에 소방시설 주변 정차·주차금지표시를 한 경우에는 길가장자리구역선 표시를 생략 •연석이 없는 도로구간 등 소방시설 주변 정차·주차금지표시(연석)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 설치
516의 4	소방시설 주변 정·주차 금지표시 (연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 제32조제6호 및 영 제10조의3제2항에 따라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또는 소방시설 등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각각 5미터 이내인 곳에서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에 정차 및 주차 금지를 표시하는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안전 표지의 설치를 요청하는 소방 관련 시설로부터 반경 5미터 이내의 도로구간 연석에 설치 •연석의 바탕은 적색으로 하고, 연석의 윗면 및 측면에 백색으로 '소방시설 주변정차금지' 문구를 표기 •소방시설 주변 정차·주차금지표시(연석)를 설치한 경우, 소방시설 주변 정차·주차금지표시는 생략 가능

※ 자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재구성

따라서 ○○소방서(○○○○○○○·○○○○○○○○)는 소방용수시설에 대해 정기 조사를 실시하여 소방용수시설의 고장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즉시 담당부서에 고장발생 보고를 하여야 하고, 소방용수조사부에 고장발생 내역 등 조사 내용을 사실대로 기록유지 하였어야 했다.

또한, 소방용수시설별 담당자는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에 주차구획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담당부서에 해당 사실을 보고하였어야 하고, 담당부서는 시·군 관련부서와 정기적으로 소방용수 시설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방용수시설의 보강, 관리전환, 표지설치 등 상호

업무협조 사항을 교류하여야 하며, 소방용수시설의 법령 및 설치기준 개정사항 등을 수시로 확인하여 즉시 반영하도록 하였어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가. 소방용수조사부 작성 부적정

○○소방서(○○○○○·○○○○○○○○)는감사 대상 기간 중 총 00회 소방용수시설 고장이 발생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고장이 발생한 소방용수시설의 소방용수조사부를 확인한 결과 ○○소방서(○○○○○○○○○○)는 0000. 0. 00.부터 상수도관 폐쇄로 사용 불가인 ○○000호 소화전과 ○○비소함000호 비상소화장치에 대하여 사용 가능한 것으로 소방용수조사부를 작성하였다.

나. 소방용수시설 정기조사 소홀

감사 대상 기간 중 소방용수시설(지상식소화전 000개소, 비상소화장치 000개소)에 대한 유지·관리 실태를 확인한 결과 ○○소방서(○○○○○○○○○○)는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한 소방용수시설 인근 5미터 이내에 위법적인 주차구획선이 확인됨에도 담당부서에 관련 사실을 통보하지 않는 등 소방용수시설 정기조사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4. 관련자 의견 및 판단: 의견 없음

5. 관련자 신분상 처분에 대한 판단

가. 소방용수조사부 작성 부적정

소방☆ ☆☆☆는 2023. 7. 10.부터 2024. 7. 3.까지 ○○소방서 ○○○○○○ ○○○○에 근무하면서, 0000. 0. 00. 상수도관 폐쇄로 현재까지 사용 불가능한 ○

○000호 소화전에 대하여 소방용수조사 결과 사용 가능한 것으로 0000. 0. 00. 소방용수조사부를 부적정하게 작성하였다.

소방♡ ♡♡♡은 2024. 1. 9.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소방서 ○○○○○○ ○○○에 근무하면서, 0000. 0. 00. 상수도관 폐쇄로 현재까지 사용 불가능한 ○ ○비소함000호 비상소화장치에 대하여 소방용수조사 결과 사용 가능한 것으로 0000. 0. 00. 소방용수조사부를 부적정하게 작성하였다.

소방♣ ♣♣♣은 2023. 7. 5.부터 2025. 1. 5.까지 ○○소방서 ○○○○○○○○ ○에 근무하면서, 0000. 0. 00. 상수도관 폐쇄로 현재까지 사용 불가능한 ○○비 소함000호 비상소화장치에 대하여 소방용수조사 결과 사용 가능한 것으로 0000. 0. 00. 소방용수조사부를 부적정하게 작성하였다.

위와 같은 각 행위는 「소방기본법」 제10조, 「현장 소방공무원 복무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 의무를 위반하였으나 그 비위의 정도가 「같은 법」 제78조 징계사유에는 미치지 못하는 대신 「(소방)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비위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되어 그 잘못을 반성하게 하고 앞으로는 그러한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주의」 처분 사유에 해당한다.

나. 소방용수시설 정기조사 소홀

소방◇ ◇◇◇은 2024. 1. 3.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소방서 ○○○○○○ ○○○에 근무하면서, ○○000호 소화전과 ○○비소함000호 비상소화장치 인근 5미터 이내에 위법적인 주차구획선이 확인됨에도 0000. 0. 00.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담당부서에 관련 사실을 통보하지 않는 등 소방용수시설 정기조사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소방● ●●●은 2024. 1. 3.부터 현재까지 ○○소방서 ○○○○○○○○○에 근무하면서, ○○000호 소화전과 ○○비소함000호 비상소화장치 인근 5미터 이내에 위법적인 주차구획선이 확인됨에도 0000. 0. 00.부터 0000. 0. 0.까지 담당부서에 관련 사실을 통보하지 않는 등 소방용수시설 정기조사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소방△ △△△은 2023. 7. 5.부터 2025. 1. 5.까지 ○○소방서 ○○○○○○○○○○○에 근무하면서, ○○000호 소화전과 ○○비소함000호 비상소화장치 인근 5미터 이내에 위법적인 주차구획선이 확인됨에도 0000. 0. 00.과 0000. 00. 00.부터 0000. 00. 00.까지 담당부서에 관련 사실을 통보하지 않는 등 소방용수시설 정기조사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소방◇ ◇◇◇은 2022. 7. 11.부터 현재까지 ○○소방서 ○○○○○○○○○○○에 근무하면서, ○○000호 소화전과 ○○비소함000호 비상소화장치 인근 5미터 이내에 위법적인 주차구획선이 확인됨에도 0000. 0. 00.부터 0000. 0. 00.까지 담당부서에 관련 사실을 통보하지 않는 등 소방용수시설 정기조사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소방Ⓜ ⓂⓂⓂ은 2023. 7. 5.부터 2025. 1. 5.까지 ○○소방서 ○○○○○○○○○○○에 근무하면서, ○○000호 소화전과 ○○비소함000호 비상소화장치 인근 5미터 이내에 위법적인 주차구획선이 확인됨에도 0000. 0. 00.부터 0000. 00. 00.까지 담당부서에 관련 사실을 통보하지 않는 등 소방용수시설 정기조사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위와 같은 각 행위는 「도로교통법」 및 「현장 소방공무원 복무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 의무 위반에 해당하지만 ① 담당자가 수시로 교체되고 담당하는 소방용수시설의 개수가 10개에 육박하는 점, ② 주차구획선이 있는 상태에서 소방용수시설 설치되었기 때문에 설치 시 관련 법령 위반 여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오해할 소지가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

하여 개인의 문책보다는 「(소방)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징계 책임을 물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지만 비위의 정도가 주의보다 중하여 과오를 반성하도록 엄중히 훈계할 필요”가 있는 「부서경고」 처분 사유에 해당한다.

6. 조치할 사항

가. ○○소방서장은

- ① [주의] 위 관련자 소방● ●○○, 소방☆ ☆☆☆을 「주의」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 ② [부서경고] 소방용수시설 관리 및 조사 업무를 소홀히 한 ○○○○○○○○ ○를 「부서경고」 처분하니,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들에 대한 교육 및 업무연찬에 매진하시고, 부서경고 처분을 받은 부서에 대해서는 특별감사 대상부서로 지정하여 특별감사를 실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③ [시정] 소방용수시설 5미터 이내 위법한 주차구획선이 확인되는 ○○○○○호 소화전과 ○○비소함○○호 비상소화장치에 대하여 지자체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정비하시고, 아울러 소속 직원에게 관련 규정 및 사례 등 교육을 실시한 후 조치결과와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④ [당부사항] 「(소방)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주의를 받은 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처분일로부터 1년간 포상대상자 추천·해외연수 대상자 선발 등 기타 수혜적 조치를 함에 있어 불이익을 줄 수 있으니 평정 등 업무에 참고하시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들에 대한 교육 및 업무연찬에 매진하시기 바랍니다.

나. ○○소방서장은

- ① [주의] 위 관련자 소방♡ ♡♡♡을 「주의」 처분하시고, 위 당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